

	<h2 style="margin: 0;">보안조직관리지침</h2>		규정번호	8-0-3	
			제정일자	2013.03.01	
	개정일자				
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10	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,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「보안규칙」에 의거하여 본 대학의 보안 및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본 대학의 보안 관련 조직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보안”이라 함은 인원·문서·자재·시설·정보시스템·개인정보 등을 관리, 보호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2. “정보보안” 또는 “정보보호”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·위변조·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·물리적·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.
3.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함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정보시스템 일체를 포함한다.
4. “개인정보”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5. “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6. “보안감사”라 함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통제절차의 기록과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사·관찰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주요 정보자산의 무결성, 가용성 및 기밀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보보안 관리 활동을 말한다.

제4조(보안조직의 구성)

보안 조직은 「보안규칙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최고보안담당관, 보안담당관, 정보보안담당관 및 부서별보안담당관으로 구성되며, 각 부서(팀) 및 학부(과)의 정보보안(개인 정보 포함)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.

제5조(책임사항)

- ① 최고보안담당관은 보유정보(전자정보를 포함)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

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정보보안 관련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- ② 최고보안담당관은 효율적·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최고보안담당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속·직책·직급·성명·연락처(전자우편 주소 포함) 등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⑤ 최고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관련 조직에 대한 수행 업무를 별지 제1호 서식 '직무기술서'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.
- ⑥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대학 내 개인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수행 업무를 별지 제1호 서식 '직무기술서'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안감사 조직)

- ① 보안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보안감사팀을 구성하며, 팀장은 총장이 지명한다.
- ② 보안감사팀 구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각 부서(팀) 및 학부(과)에서는 해당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보안감사팀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제7조(감사조직의 역할)

- ① 보안감사팀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활동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안감사를 실시하며, 필요 시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.
- ② 보안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안감사팀은 관련 규칙에 따라 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.
- ③ 보안감사팀은 보안감사를 실시하고,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장 보안조직

제8조(최고보안담당관)

- ① 최고보안담당관은 사무처장으로 한다.
- ② 최고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- 1. 최고보안담당관은 본 대학의 보안 및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·총괄하며 각 부서(팀)별 보안 및 정보보호 업무를 지도·감독
 - 2. 보안심사위원회에 정보보안 분야 안전 상정 및 심의 주관
 - 3. 정보보안 정책의 수립·적용 및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통제
 - 4. 정보보안 업무 지도·감독 및 정보(개인정보)보안 감사·심사분석
 - 5. 정보통신실, 정보통신망 및 정보(개인정보)자료 등의 보안관리
 - 6. '사이버보안진단의 날' 계획 수립·시행

7. 보안사고 발생 시 보안사고 대응 업무
8. 기타 정보보안 관련 사항

제9조(보안담당관)

- ① 정보보안을 제외한 분야의 보안담당관은 총무팀장으로 한다.
-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1. 연도별 보안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(보안관련 주요 성과 및 실적 분석)
 2. 보안(인원, 시설, 문서, 자재 등 일반보안) 진단
 3. 보안교육(일반보안 및 보안인식 교육)에 관한 사항
 4. 비밀소유 및 취급인가자 현황 조사
 5. 보안서약의 집행
 6. 시설보안 및 보호구역 관리 등
 7. 보안규칙 수립(지침·절차서 총괄) 및 개선 대책 수립

제10조(정보보안담당관)

-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종합정보지원실장으로 한다.
-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1. 정보통신 보안활동 계획 수립
 2. 정보통신망 신·증설시 보안대책 수립
 3. 정보통신실, 정보통신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
 4.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도, 감독 및 교육
 5. 정보통신 보안 사고조사 및 처리
 6.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관리
 7. 정보통신 보안업무 심사분석 관장
 8. 정보통신 보안관련 지침 등 제도개선
 9. 정보통신망 취약성 진단
 10. 기타 정보통신 업무 관련 사항

제11조(부서별보안담당관)

부서별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(팀) 또는 학부(과)의 보안 및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·총괄하며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요청에 협조한다.

제12조(보안담당자)

본 대학의 보안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각 부서(팀) 및 학부(과)에 해당 업무별 담당자를 보안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정보보안담당자)

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 보좌 및 업무 지원을 위해 보안 및 정보보안의 기술적인 실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4조(개인정보보호책임자)

- ① 본 대학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(CPO: Chief Privacy Officer)는 사무처장으로 한다.
-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- 1.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2.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 - 3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
 - 4. 개인정보 유출 및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 - 5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6.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
 - 7.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시행
 - 8.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
 - 9.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
 - 10.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교내 개인정보의 취급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,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, 내부감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개인정보파일 및 그 관리 현황에 관한 자료
 - 2. 개인정보의 열람·발급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청구 현황 및 그 처리 실적에 관한 자료
 - 3.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자료
 - 4. 개인정보 제공 실태 및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
 - 5.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자료
 - 6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통지에 관한 자료
 - 7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43조·제49조에 따른 분쟁조정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단체소송 수행 자료
 - 8. 개인정보 열람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
 - 9. 기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

제15조(개인정보보호담당자)

- ① 본 대학의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총무팀장으로 한다.
- ②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·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- 1. 보유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성, 정확성 및 최신성의 확보
 - 2.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에 대한 처리
 - 3.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
 - 4.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 감독
 - 5. 개인정보 보안 사고에 대한 조사 및 보고
 - 6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

- 7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43조·제49조에 따른 분쟁조정 및 동법 제51조에 따른 단체 소송의 수행
- 8. 개인정보 관련 통계보고
- 9. 기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16조(개인정보취급책임자)

- ① 본 대학의 개인정보취급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·관리하는 각 부서(팀)장 및 학부(과)장으로 한다.
- ② 개인정보취급책임자는 본 대학의 「개인정보보호규칙」 과 「개인정보보호지침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개인정보취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- 1.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관리 감독
 - 2.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담당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
 - 3.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
 - 4.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기록 관리 등

제17조(개인정보취급자)

- ① 본 대학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·관리하는 각 부서(팀) 및 학부(과)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.
-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본 대학의 「개인정보보호규칙」 과 「개인정보보호지침」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- 1. 개인정보의 처리
 - 2. 개인정보보호 취급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
 - 3.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
 - 4.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기록 등

제3장 위원회

제18조(보안심사위원회)

-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계획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'보안심사위원회'를 둔다.
- ②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보안 관련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- 2.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보안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- 4. 전산망 신·증설 계획 및 전산화 용역개발 사업에 관한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④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

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, 각 처장 및 종합정보지원실장으로 구성한다.
- ⑦ 보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보안담당관으로 한다.

제19조(개인정보보호위원회)

- ①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계획 수립 및 기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‘개인정보보호위원회’를 둔다.
-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방침 및 세부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2.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3. 본 대학 및 타 기관과의 개인정보 수집·저장·제공·이용·과기 등에 관한 사항
 - 4.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
 - 5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대한 위반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
 - 6.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- 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.
-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.
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4호 ‘개인정보보호 조직도’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담당자, 개인정보취급책임자(각 부서(팀)장 및 학부(과)장)로 구성한다.
- ⑧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한다.
- 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(정보보안위원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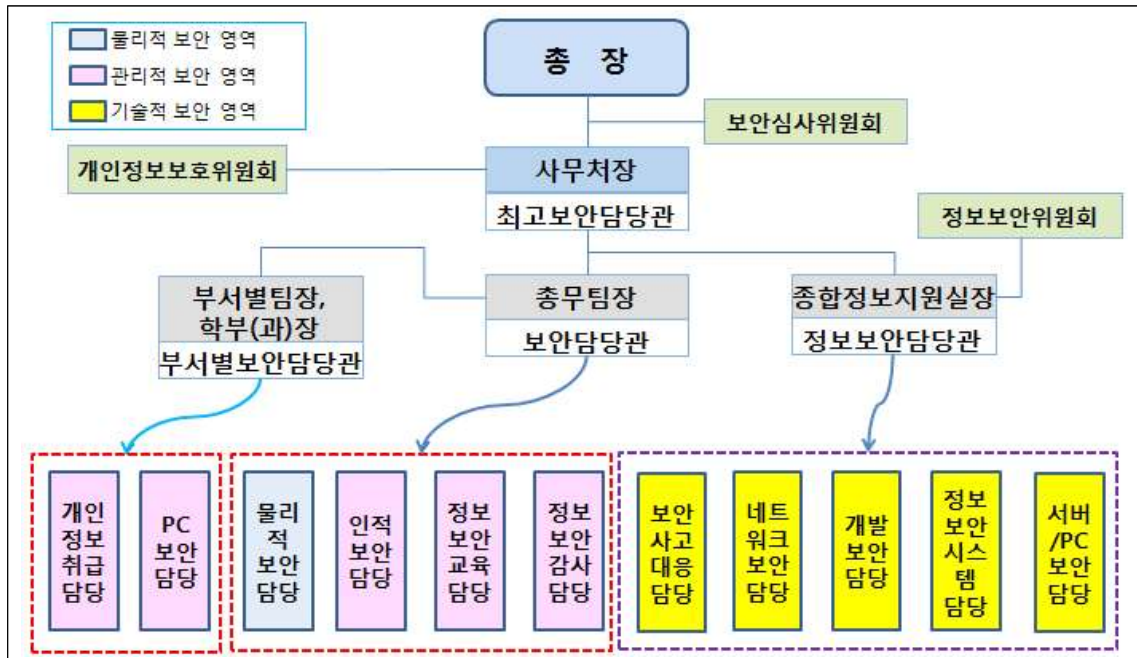
- ①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보안관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‘정보보안위원회’를 둔다.
- ② 정보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정보보안과 관련된 규칙과 방침 및 정책의 수립, 개정에 관한 사항
 - 2. 정보보안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
 - 3. 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
 - 4. 정보보안을 위한 정보보안대책의 수립 및 추진
 - 5. 정보보안 위규 적발 강화 및 사고조사 처리
 - 6. 정보보안 업무의 조정 및 감독

- 7. 정보보안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- 8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정보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 - ④ 정보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.
 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⑥ 정보보안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, 지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⑦ 위원은 당연직 위원, 지명직 위원으로 구분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당연직 위원: 총무팀장, 교육운영팀장, 기획팀장, 학생지원팀장, 교육지원팀장
 - 2. 지명직 위원: 교직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4명 이내
 - ⑧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⑨ 정보보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정보지원팀장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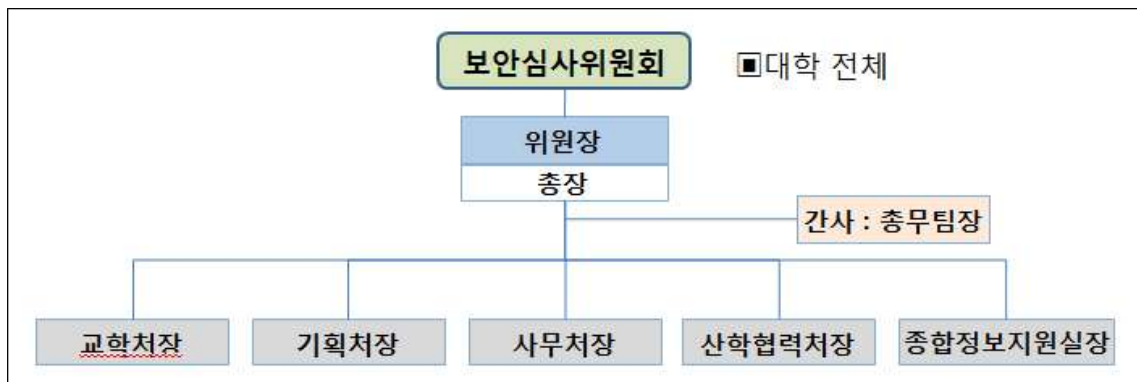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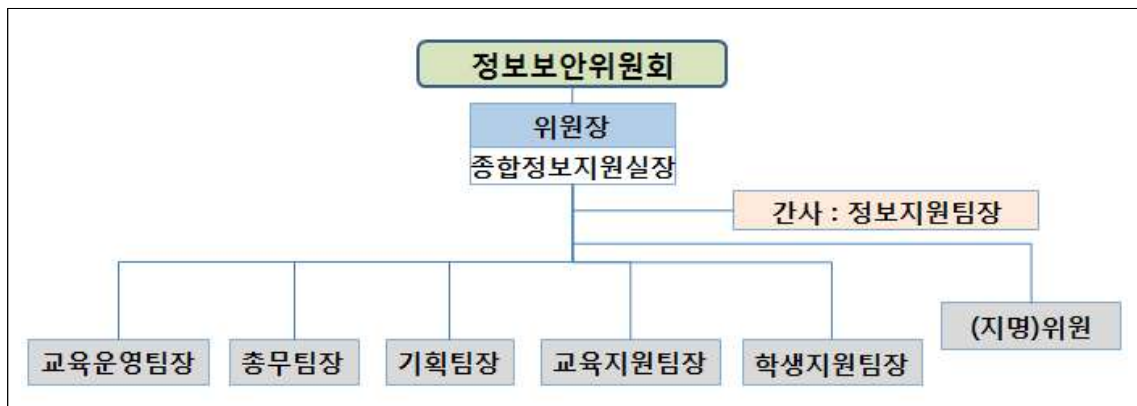
[별지 제1호] 보안 조직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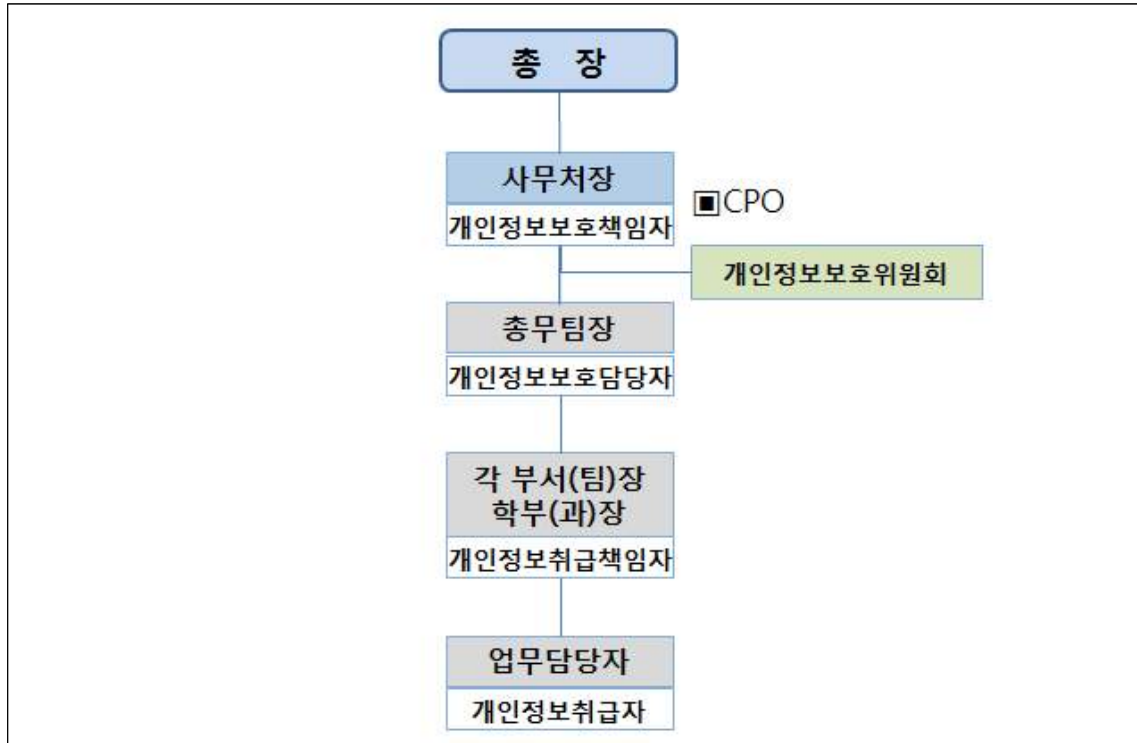
[별지 제2호] 보안심사위원회



[별지 제3호] 정보보안위원회



[별지 제4호] 개인정보보호 조직도



[별지 제5호]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